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지방협력회 구성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3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 · 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⑧ (생략) 제6조(실무협의회) ① (생략)	법률 제21065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 장관-----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u>교육부차관</u>,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2. ~ 4. (생략) ③ ~ ⑥ (생략)	② ----- -----. 1. ----- -----<u>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u> <u>1명, 교육부차관</u>-----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중앙지방협력회의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여 2022년부터 설치·운영된 기구로서, ①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사무 및 자원배분에 관한 사항, ③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④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은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재정경제부장관, ④교육부장관, ⑤행정안전부장관, ⑥기획예산처장관, ⑦국무조정실

1)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

장, ⑧법제처장, ⑨시·도지사, ⑩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⑪지방시대위원장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는 ①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②교육부차관, ③행정안전부차관, ④기획예산처차관, ⑤국무조정실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⑥법제처 차장, ⑦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⑧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가 구성원 중 지명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3회, 2025년 1회 개최되었으며,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현황>

		안 건
2022	제1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제2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2.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3.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4.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2023	제3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2.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3. 중앙권한 지방이양 4.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제4회	1.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계획
	제5회	1.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2.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4.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5.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2024	제6회	1. 의사 집단행동 대응 2.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제7회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제8회	1.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2.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4.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5.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2025	제9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2.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3.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4.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차관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과학기술 산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이며,

최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AI·반도체·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의 지역육성전략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²⁾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로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차관을 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³⁾상으로도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⁴⁾에 대한 개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법률 제21065호는 현재 시행 중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2)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의)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란 이와 같이 법률의 제정·개정 시 그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법률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법률을 말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 발전과 지역산업의 성장 간 연계가 중요한 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